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04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1
1. 장애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관련)	11
2. 산업재해보험장해자 연도별·급수별 현황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 및 부상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따라야 함.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징병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다수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공익을 위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에서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극히 취약한 상황임.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까다로운 지정 여건과 연금성 복지에 따른 지원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전상 또는 공상 군인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중사상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었고 진입장벽이 높은 자체 심신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마련하여 징병 대상인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하여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1.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의 변경

개정안은 군인의 장애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금액 및 등급기준 적용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후단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3조(장애보상금) ① ----- ----- ----- ----- ----- ----- ----- . 이 경우 제3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평균 임금기준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1. ----- ----- ----- ----- -- 제3호에 따른 -----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2. -----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생략)	----- ----- ----- ----- 제3호에 따른 ----- 3. 그 밖의 심신장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와 곱한 금액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심신장애의 -----. ⑤ (현행과 같음)
---	---

□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¹⁾, 국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 등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1)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자유가 제약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장병들이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 및 부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되었음.³⁾

- 현행법상 병사 등에 대한 장애보상금은 병사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예외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는 기한 제한 없음)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심신장애등급은 1급에서 11급까지로 나뉘며, 심신장애등급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하여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10급·11급인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면서 군 의료체계의 지원을

3) 기존 「군인연금법」에 군인 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양 제도는 목적과 재원이 상이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2019. 12. 10.)하였음.

받게 되므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인 장애등급 1급은 심신장애 등급 1·2급, 2급은 심신장애등급 3~5급, 3급은 심신장애등급 6~7급, 4급은 심신장애등급 8·9급이며,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부상 또는 질병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장애등급 4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아야 함.

□ 현재의 장애보상금은 전역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만 지급하고, 장애등급 4급의 경우에는 부상 등과 공무상 연관성을 요구하며, 기준상 보상금액도 1,713만원에서 4,283만원으로 부상 등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최근 3년간 장애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보상금 지급인원은 연 300명 내외 수준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2,400만원 수준임.

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표 1] 최근 3년간 장애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3년	'24년	'25년
인원 (명)	전상	1급	-	-	-
		2급	-	2	1
		3급	-	2	-
		4급	-	-	-
	특수직무 공상	1급		1	1
		2급	1	3	-
		3급	2	2	3
		4급	2	2	3
	그 밖의 심신장애	1급	31	39	34
		2급	20	21	17
		3급	71	48	73
		4급	196	167	165
	합 계		323	287	297
금액 (백만원)	전상	1급	-	-	-
		2급	-	163	86
		3급	-	123	-
		4급	-	-	-
	특수직무 공상	1급	-	93	93
		2급	61	186	-
		3급	91	93	141
		4급	61	61	95
	그 밖의 심신장애	1급	1,497	1,925	1,722
		2급	650	690	550
		3급	1,731	1,169	1,827
		4급	3,185	2,748	2,788
	합 계		7,276	7,251	7,300

※ 자료: 국방부

이에 개정안은 장애등급 4급의 경우에도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와 동일하게 부상 등과 공무상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애등급 기준 등을 준용함으로써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병사 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총 14단계로 나뉘지고 있으며 장해발생 사실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음.⁵⁾

[표 2] 장애보상금과 장해보상일시금 비교표

법 령	「군인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원금	장애보상금	장해보상일시금
취 지	군 복무 가능여부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일시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전 (일시금)
등 급	1 ~ 4급	1 ~ 14급
업무연관	병사 1~3급은 비공상 경우에도 지급 * 4급은 공상의 경우만 지급	업무 연관성이 전제되어야 지급
보훈급여와의 병급	병급가능	병급불가

자료: 국방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받도록 하고 있음.

즉,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는 국가방위를 위해 복무하면서 공무를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장애보상금의 보상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은 △위로금 성격의 일시금 △비공상인 경우(병사, 1~3급에 한정)에도 지급 △다른 급여와 병급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은 △소득보전 급여 △업무연관성 전제 △다른 급여와 병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시 「군인재해보상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등급 기준 및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국방부의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적용할 경우, 대상인원은 356명에서 1,847명으로, 소요예산은 78억 7,100만원에서 591억 1,1800만원으로 증가하여 추가소요 재정은 연 512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예산증가 소요 추계]

구분	현 행	개 정	증 액
대상인원	356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1~9등급	1,847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등급 적용 시	-
소요예산	7,871백만원	59,118백만원	51,247백만원

※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보상금 인상을 통해 지원 수준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군인 재해보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의 차이점, 보훈급여의 연계성 및 소요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전용기의원안 기준)
심신장애등급 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2. 산업재해보험장해자 연도별·급수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급수별	2022년	2023년	2024년	평 균
계	44,240	46,507	52,229	47,659
1급	162	68	125	118
2급	68	68	84	73
3급	187	162	135	161
4급	60	57	71	63
5급	231	177	235	214
6급	458	569	869	632
7급	915	814	812	847
8급	1,225	1,456	1,987	1,556
9급	1,785	1,783	1,703	1,757
10급	3,480	3,620	4,195	3,765
11급	5,579	5,850	6,579	6,003
12급	6,595	6,608	6,956	6,720
13급	2,554	2,415	2,764	2,578
14급	20,941	22,860	25,714	23,172

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 2025년 현황은 '26년 말 공개(예정)

자료: 국방부